

제415회 임시회

'24. 3. 14.(목)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4년 3월 5일
- 회부일자 : 2023년 3월 6일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안 제4조)
-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제7조)
- 적극행정위원회 서면심의 규정 반영(안 제6조)
- 위원 해촉 사유 추가(안 제10조)

5. 검토의견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 하려는 것임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지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이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2022.12.27.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영의 시행일이 2022년 12월 27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자구수정 내용 >

| 조문 | 개정사항 | 비고 |
|--------|---|-------------|
| 제5조제2항 | 위원회의 위원장 →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처음 용어에 약칭표기 |
| 제5조제3항 | 위원회의 위원 은 →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 처음 용어에 약칭표기 |
| 제6조제1항 | 위원회 회의는 → 위원회의 회의는 |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 |
| 제6조제1항 | 연2회 → 연 \surd 2회 | 띄어쓰기 |
| 제7조제1항 | 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 위원장 | 약칭표기 삭제 |

- 안 제6조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음.

- 본 영의 입법체계에 맞춰 기존의 제3항을 제2항으로, 기존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의 '재적의원'을 '제2항에 따른 구성원'으로 변경하고,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서면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안 제7조는 본 조례안 제4조의 위원회의 명칭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개정(2021.4.9.)됨에 따라 제7조의 위원회 명칭도 변경 되었어야 하나, 개정 당시 미반영된 명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행) 지원위원회 → (개정안) 위원회

※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개정사항

| | |
|---|--|
| 2019.12.13. 제정(조례 제4339호) | 2021.4.9. 일부개정(조례 제 4520호) |
|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 안 제10조제5호는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 설></u> | 제10조(위원의 해촉)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송을 당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서면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